

『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』

현 안 업무보고

2017. 2. 17.

서울특별시

도시계획국

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
 - 1.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(안)
 - Ⅱ.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
- Ⅲ. 향후계획

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

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난개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재정적·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함

- I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(안)
- □ 시 관리 대상 : 총 135건 ('20년 실효도래)
 - 면적은 98.06km²로서 市전체 면적(605.25km²)의 16.2%에 해당함
 - 그 중 공원시설이 94.62km²로써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(96.5%) 차지
- □ 시설별 재정비(안)
 - 시설 주관부서 T/F운영을 통해 정비(안) 마련
 - 총 135건 : 존치 104건, 일부해제 17건, 해제 14건
 - 공원시설 71개소는 해제시 환경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전체 존치
- □ 존치시설 집행 소요예산
 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로 분류된 총 104건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13조 4,787억원임
 - 공원시설 보상비만 11조 6,785억원으로써 전체 소요예산중 86.6%

구 분	건수	금액(억원)	구분	건수	금액(억원)
총 계	104	134,787	학 교	5	2,288
도로	9	4,240	수 도	3	383
광 장	2	685	운동장	1	5,616
공 원	71	116,785	체육시설	1	469
녹 지	11	4,199	자동차정류장	1	122

※ 금액산정 : 공사비 + 보상비(공원은 보상비로 산정),비재정 사업비 1,576억원 포함

- □ 10년이상(자치구 포함)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
 - 시설별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존치. 해제 등 유형 구분

《용역 개요》

◆ 용 역 명: '20년 실효대비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

◆ 용역수행 :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외 1개사

◆ 기간/예산 : '16.5.~'18.2. (21개월)/ 449백만원('16년 200백만원, '17년 249백만원)

- □ 해제로 분류 및 시의회 해제권고된 시설 해제절차 이행
 - 해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절차 이행('17. 상반기)
 - 市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2개소(폐지 14건, 변경 18건)
- □ 집중관리를 요하는 공원시설은 해제 이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
 - 도시자연공원구역, 녹지지역 변경 등 다양한 대안 검토
 - 공원시설은 해제 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푸른도시국 용역과 연계하여
 용도구역·용도지역 변경방안 마련
 - ※ 푸도국 용역: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(안) 미련용역(17.2~18.1.), 근린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(17.3~18.2.)
- □ 2017년 해제신청제 대비 T/F 구성 및 운영(필요시 수시개최)

○ 구 성 : 도시계획국(시설계획과-총괄) + 시설별 주관부서 + 예산담당관

○ 과 제 : 문제점 검토 및 해제여부 결정, 해제후 관리방안 논의

○ 실 적 : 총 6건 [기각(신청대상 아님) 5건, 검토중 1건]

【 해제신청제도 ('17.1.1시행) 】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, 시행령 제42조의2
-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신청 가능

- □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운용 관련
 - 서울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수립 및 운용 ('13.~'16.)
 - 도시공원법 및 국토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 여건에 맞는 지침 마련 ⇒ 제안자격, 사전타당성 검토절차, 비공원시설부지 선정시 고려사항 등 명시
 - 운용사례 : 총 4곳 (서리풀근린공원, 관악산, 현충근린공원, 까치산근린공원) 모두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미수용

Ⅲ 향후계획

- □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
 - 공원시설이 아니라도 개발 안되는 양호한 산지를 시재정으로 보상 당위성 부족
 - 시재정 형편상 전체 집행이 불가하다는 문제인식을 우선 시민들과 공유
- □ 시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
 - 2020년 이후에도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보존·보호를 위해 실효전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필요
 - ⇒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(푸른도시국)⇒ 변경절차 이행(도시계획국)
 -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
- □ 현황상 맞지 않는 용도지역(녹지지역 등) 변경
 - 市공원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이 19.5㎢(23.2%)로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는 현황과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지정됨
 -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와 양호한 지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 필요
 - 비오톱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,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검토 ⇒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, 용도지역 변경도 함께 추진
- □ 개발행위허가 기준 보완을 통한 해제 공원지역 관리방안 모색
 - 임상이 양호한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발요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.
 - 선별적인 보상 추진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산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- ⇒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검토·보완